



우리나라 법학계는
신 분야의 개발이 더더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보호가 소홀해지고,
국제적으로는 법률분야의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제3회 대한민국법률대상 학술부문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와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경제법 및 지적재산법, 구체적으로는 특별법인 농업법·저작권법의 전문가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법·협동조합법·소비자보호법·수산업법인데 제3회 대한민국법률대상 학술부문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은 제가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196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경제법의 전임교수(조교수)로 발령을 받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법 강의를 시작하여 27년간 경제법 강의를 하였고, 농업법은 1989년 1학기부터 서울농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농업법」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리하여 지금까지 경제법분야에서 8권의 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은 1984년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하여 26년간 권리자권의 옹호의 입장에서 저작권법 연구를 하였습니다. 경제법이든 저작권법이든 모두가 「특별법」 이어서 남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수요도 없었던 생소한 분야이었습니다.

1970년 - 80년대에 우리나라의 법학계의 특징은 6법으로 치중되어 있어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유사한 의학계에서는 전문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입법계·법조계·법학계는 전문화·세분화가 대단히 느립니다.

신 분야의 개발이 더딘 결과 국내적으로는 국민이나 당사자의 보호가 소홀이 되고, 국제적으로는 법률분야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저의 주장의 요점은 우리들 법률가를 대분하면 Generalist와 Spezialist로 나누어지는데, 법률일반에 종사하는 분도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문가는 더욱 자기 분야의 연구를 심화하여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법학계에서는 복수전공도 흔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필요한 사람은 많은 전문가고 연구자입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경쟁에서 이겨내는 길은 차별화와 전문화일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특수 분야가 많이 개발이 되고 전문화도 자연히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법(Technikrecht) · 법정보학(Rechtsinformatik)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미개척 분야이며, 집합건물법 · 소비자보호법(내용이 세분화되고 있음) · 생명공학법 · 유전공학법 · 의사법(의료과오법) · 수산업법 · 소송외적 분쟁해결(ADR) 중 조정 · 협상도 좀 더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행정 분야에 전문가, 예컨대 건축법 · 도시법 등 이미 제정되어 있는 특별법분야도 더 연구 · 개발되어야 할 분야라고 봅니다.

법학의 연구방법은 변천하고 있습니다. 법학은 일반법(일반법도 세분화되고 있음)의 연구이외에 특별법의 연구와 분야별 전문화의 방향으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제3회 대한민국법률대상 학술부문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와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년 1월 7일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黃 迪 仁



국회의 권위는 지켜져야 하며 국회가 통법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어 국민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다만, 14대, 16대 국회의장 재임시 이 나라 국회의 고질병인 날치기를 없애고, 직권상정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항상 인내하면서 여야 절충을 통해 여야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가 폭력국회가 되고, 난투장 국회가 된 데에 대해 선배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는 국회가 이런 일 없이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국회가 되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당의 국회도 아니고, 야당의 국회도 아니며, 오직 국민의 국회라는 믿음을 국회의장단이나 여야의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입법부는 제3장에, 행정부는 제4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법부가 오히려 행정부의 상위개념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 하에서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무리한 요청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국회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통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법률대상을 받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의회발전에 다소의 기여한 바를 잊지 않고 높이 평가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과 법률대상위원회 박근혜 의원님, 김용준 변호사님 등 공동위원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을 계기로 나는 다시 한 번 후배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국회를 만들도록 충고하고, 계속 격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 1월 13일

전 국회의장 李 萬 燮



헌법이 살아 있는 국가가 선진국가입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설립당시 청사도 없이 을지로에 세들어 살던 헌법재판소가 이제 국회, 대법원과 나란히 국가 5부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지난 세월을 새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분야에 대한 기반이 없었던 군사정부시절에 국민직선제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초대소장으로서의 영광을 받게 되었으나, 불모지와 같은 분야였기에 여러 제3회선배와 후배들과 함께 세계의 헌법재판제도를 연구하여 재판운영의 기본 틀을 잡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튼실하게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건물을 새로 건축하고, 재판방식을 만들었던 어려웠던 시절, 함께 했던 동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식구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 법률대상의 영예를 같이하고 싶습니다.

본인은 국가 최고기본법으로서의 헌법이 살아 제 기능을 다하고, 헌법이 국민의 법의식에 깊숙이 자리 잡힌 국가가 선진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개척사에 대해 좋게 평가해 주신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의 김대인 총재, 박근혜 의원, 김철수 교수 외 7명의 공동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 역시 헌법재판과 법률가의 길을 걸어온 것을 격려하여 주시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게 그 뜻을 길이 간직하겠습니다.

2011년 1월 13일

변호사, 초대 헌법재판소 소장 曹 圭 光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법치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법률대상위원회」에서 주는 「대한민국법률대상」 인권부문 수상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이 상이 다른 어떤 상보다도 자랑스럽고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한국의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제 나름의 평소 소회를 간략히 밝히는 것으로써 수상소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치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째 법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법적용의 일관성, 형평성), 둘째 법은 투명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법의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 적용은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해야 한다(법적용의 적시성, 경제성)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용의 공정성, 일관성입니다. 법치 열외 내지 예외주의, 적법절차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법치불감증 내지 목표지상주의가 일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사마천은 「사기열전」에서 법이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윗사람부터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윗사람들의 행실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행되고 윗사람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을 내려도 복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우리사회의 모든 국정현안과 사회문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핵심(요체)입니다.

또한 원칙(헌법정신)이 분명한데도 편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려는 변칙이 허용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법치주의는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측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나 책임이 따르지 않고 상대방인 국민에게만 준수를 요구하는 제도나 법의 운용은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에게만 약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측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가 준수하는 쌍방통행이 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룹, 소외계층 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 분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등 국가보호를 받을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정부의 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행동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법제는 그대로 놔둔 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것 역시 헌법의 정신과 법치의 본질 및 공정사회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패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법치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13일

변호사 · 전 법제처장 李 石 淵



앞으로 더욱 더 열성적인 봉사를 해외한인사회와 조국을 위하여 펼치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민족의 긍지를 세계에 알리고, 동포들과의 연대를 위해 애쓰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예로운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감사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 각 분야에서 공헌이 많았던 저명한 지도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생활하면서 변호사로서 법학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브라질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통해 한국의 정치철학과 정치문화를 심어주는 데에 힘을 기울였고, 비록 타국에서지만 법조인과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희망이 실현되어서 항상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미국, 브라질 등 교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애환을 같이 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공정한 법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의 후세들이 차별과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인 권한 확보와 동포사회 발전의 기틀을 심어주는 것은 참 보람입니다. 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첨경인 ‘사법개혁’에 있어서 그간 반세기 인생을 5대양 6대륙을 밟으며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미력이나마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고문으로 활동하며 일조하게 된 것도 매우 감사하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시대에 해외 여러 곳으로 한류의 급물살을 타고 한국의 문화가 알려지며 경제적 활동범위까지 신장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빛나는 도약과 발전을 보여주는 역사적 쾌거인 것입니다. 이에 법률대상에 해외동포까지 포함해주신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제게 주신 법률대상은 본인 여생에 있어서 큰 영예를 안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열성적인 봉사를 해외한인사회와 조국을 위하여 펼치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 겸허히 믿습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아울러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공동위원장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I am humbled by the recognition I am receiving for my work and servic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United States

I am extremely pleased and honored to be nominated to receive the Grand Legal Award from the Good Law organization. As a Korean born in South Korea and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t is especially significant to me and my family that I am receiving such an award from an organization that is based in Korea and is as notable and respected as the Good Law organization. I am humbled by the recognition I am receiving for my work and service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United States and for being fortunate to achieve the status of becoming the first female Korean American judge in the State of California.

I would like to also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Selection Committee for nominating me. It is an honor to be nominated by a group of such esteemed members of the legislature, academia and legal community of South Korea. I am especially appreciative of William Min from Los Angeles for supporting my nomination. William Min, who is a past recipient of the Grand Legal Award, is greatly respected by all those who know him.

In addition, I would like to commend the Good Law organization for serving as a strong advocate for legal justice and peace and for being an unwavering force in ensuring that the high standards of integrity, transparency and fairness are extended to all who seek legal justice. Thus, I am especially honored and thankful to be receiving the Grand Legal Award from the Good Law organization. Thank you very much.

2011년 1월 13일 Judge **Tammy Chung Ryu**



It is indeed a high honor and a great privilege for me to serve as an advocate for justice and the rule of law in Korea.

The Good Law Legal Justice Group is recognized as the premier Korean NGO working for legislative and judicial reform, equality under the law, justice for all, and human rights.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Kim, the staff and volunteers who work for this excellent organization have given all Koreans an effective voice in government and the legal system.

For many years, The Good Law Legal Justice Group has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Korea as an advocate for transparency, accountability, ethics, and integrity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government.

It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transformation to true democracy and a representative form of government in Korea. It is indeed a high honor and a great privilege for me to serve with President Kim and The Good Law Legal Justice Group as an advocate for justice and the rule of law in Korea.

I accept this award with a deep sense of gratitude and appreciation. Thank you so much for the recognition and this award.

2011년 1월 13일

Professor **Wayne E. Reeves**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